관악봉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 08. 07.)

1. 건설위치

블록	건설위치	건설호수
H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0-311번지	140호
H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0-5번지	36호
H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0-255번지	60호

※ 관악봉천 행복주택은 기숙사형 공공주택으로서 대학생계층 및 청년계층만 공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계층은 상기 3개 블록 중 1개 블록만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계층은 H2블록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8.07.(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주택소유 판단의 시작기준일로, 이 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4.08.0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08.08~2005.08.0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 단, 「주거약자용 주택」(22세대)」은 '대학생 또는 청년계층인 주거약자'에게 공급됨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주거약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신청서류(5.신청서류 참조)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4.8.19.~8.21.)	('24.8.28.)	('24.9.2.~9.4.)			('24.12.5.)	('24.12.18.~12.20.)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H1블록 (단위:천원)

주택 타입	공급 대상	공급물량(호)		세대당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원)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밖의 공용	합계	계	계약금	잔금					
17A	대학생 계층	28	29	17.41	8.75	4.62	30.78	43,520	2,176	41,344	174,080	(+)17,000	60,520	74,91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개별 난방/ '25.04.
												(-)36,000	7,520	279,080	
17B 주거약자용		5	5	17.41	8.75	4.62	30.78	42,840	2,142	40,698	171,360	(+)17,000	59,840	72,190	
												(-)36,000	6,840	276,360	
17C		35	36	17.41	8.75	4.62	30.78	42,840	2,142	40,698	171,360	(+)17,000	59,840	72,190	
												(-)36,000	6,840	276,360	
19B 주거약자용		1	1	19.90	10.00	5.28	35.18	48,620	2,431	46,189	194,480	(+)20,000	68,620	77,810	
												(-)41,000	7,620	314,060	

■ H2블록 (단위:천원)

주택 타입	공급 대상	공급물량(호)		세대당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원)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밖의 공용	합계	계	계약금	잔금					
17A	대학생 계층	1	1	17.41	11.53	6.99	35.93	43,520	2,176	41,344	174,080	(+)17,000	60,520	74,91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개별 난방/ '25.04.
												(-)36,000	7,520	279,080	
	청년계층 (소득無)	4	5	17.41	11.53	6.99	35.93	43,520	2,176	41,344	174,080	(+)17,000	60,520	74,910	
												(-)36,000	7,520	279,080	
	청년계층 (소득有)			17.41	11.53	6.99	35.93	46,080	2,304	43,776	184,320	(+)18,000	64,080	79,320	
												(-)38,000	8,080	295,150	

17B 주거약자용	대학생 계층	-	1	17.41	11.53	6.99	35.93	42,840	2,142	40,698	171,360	(+)17,000	59,840	72,190	
												(-)36,000	6,840	276,360	
	청년계층 (소득無)	1	1	17.41	11.53	6.99	35.93	42,840	2,142	40,698	171,360	(+)17,000	59,840	72,190	
												(-)36,000	6,840	276,360	
	청년계층 (소득有)			17.41	11.53	6.99	35.93	45,360	2,268	43,092	181,440	(+)18,000	63,360	76,440	
												(-)38,000	7,360	292,270	
17C	대학생 계층	2	2	17.41	11.53	6.99	35.93	42,840	2,142	40,698	171,360	(+)17,000	59,840	72,190	
												(-)36,000	6,840	276,360	
	청년계층 (소득無)	7	8	17.41	11.53	6.99	35.93	42,840	2,142	40,698	171,360	(+)17,000	59,840	72,190	
												(-)36,000	6,840	276,360	
	청년계층 (소득有)			17.41	11.53	6.99	35.93	45,360	2,268	43,092	181,440	(+)18,000	63,360	76,440	
												(-)38,000	7,360	292,270	
19A	대학생 계층	-	1	19.90	13.18	7.99	41.07	49,640	2,482	47,158	198,560	(+)20,000	69,640	81,890	
												(-)41,000	8,640	318.140	
	청년계층 (소득無)	-	1	19.90	13.18	7.99	41.07	49,640	2,482	47,158	198,560	(+)20,000	69,640	81,890	
												(-)41,000	8,640	318.140	
	청년계층 (소득有)			19.90	13.18	7.99	41.07	52,560	2,628	49,932	210,240	(+)21,000	73,560	87,740	
												(-)44,000	8,560	338,570	
19B 주거약자용	청년계층 (소득無)	-	1	19.90	13.18	7.99	41.07	48,620	2,431	46,189	194,480	(+)20,000	68,620	77,810	
												(-)41,000	7,620	314,060	
	청년계층 (소득有)			19.90	13.18	7.99	41.07	51,480	2,574	48,906	205,920	(+)21,000	72,480	83,420	
												(-)43,000	8,480	331,330	

■ H3블록

(단위:천원)

주택 타입	공급 대상	공급물량 (호)		세대당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원)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밖의 공용	합계	계	계약금	잔금			양대 보증금	월 임대료(원)	
17A	대학생 계층	10	11	17.41	8.52	4.92	30.85	43,520	2,176	41,344	174,080	(+)17,000	60,520	74,91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개별 난방/ '25.04.
												(-)36,000	7,520	279,080	
17B 주거약자용		2	3	17.41	8.52	4.92	30.85	42,840	2,142	40,698	171,360	(+)17,000	59,840	72,190	
												(-)36,000	6,840	276,360	
17C		16	16	17.41	8.52	4.92	30.85	42,840	2,142	40,698	171,360	(+)17,000	59,840	72,190	
												(-)36,000	6,840	276,360	
19A		-	1	19.90	9.73	5.62	35.25	49,640	2,482	47,158	198,560	(+)20,000	69,640	81,890	
												(-)41,000	8,640	318,140	
19B 주거약자용		-	1	19.90	9.73	5.62	35.25	48,620	2,431	46,189	194,480	(+)20,000	68,620	77,810	
												(-)41,000	7,620	314,060	

2-1. 공급물량 및 면적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우선공급을 신청한 해당 블럭·주택타입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2-2. 주택타입

■ 공동취사형(17C 타입)과 개별취사형(17A, 17B, 19A, 19B 타입)

- 관악봉천 행복주택은 기숙사형 공공주택으로서, 세대내 주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취사형」(17C 타입)과, 세대 내 주방시설이 설치된 「개별취사형」(17A, 17B, 19A, 19B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 개별취사형과 공동취사형은 아래와 같이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구분		가스쿡탑	소형냉장고	벽걸이에어컨	옷장	책상	신발장	비고
개별취사형(주방설치)	17A	○	○	○	○	○	○	모든 주택타입 입주자는 각 블록(동)마다 설치된 공동취사시설 이용 가능
	17B							
	19A							
	19B							
공동취사형(주방미설치)	17C	x	○	○	○	○	○	

- 각 블록(동)마다 공동취사시설(싱크대, 가스쿡탑) 및 공용세탁시설(코인세탁기·코인건조기)이 설치됩니다.
 - 공동취사형 주택 입주자 뿐만 아니라 개별취사형 주택 입주자도 동 시설을 이용가능합니다.
 - 각 블록(동)에 공동취사·세탁시설 등이 설치된 공동주방/세탁실 위치는 별첨 팸플릿의 배치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17B, 19B 타입)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관악봉천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17B, 19B 두 타입으로 건설됩니다.
 * 각 타입의 설치 시설은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타입의 신청자격은 3-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임대조건 및 입주시기

- **<u>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u>**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신청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청년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무주택자란?**

 분양권등*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인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전 출생한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부모의 이혼 등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출산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 · 자산기준 (한도)		
	가구원 수	출산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대학생	1인	0인	120%	100,000,000원	-
	2인	0인	110%	100,000,000원	-
		1인	120%	109,000,000원	-
	3인 이상	0인	100%	100,000,000원	-
		1인	110%	109,000,000원	-
		2인 이상	120%	119,000,000원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전 출생한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179,557원 이하
2인	-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무주택자**'란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경우
2순위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1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경기도 지역**인 경우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당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관악구**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2순위	당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관악구 외 서울특별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거주	대학생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관악구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단, 부모 모두 관악구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당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관악구에 3년 이상 거주	당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관악구에 3년 미만 거주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항목은 우선순위 1순위에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1순위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2순위	순위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3-2. 청년 계층

※ 청년계층은 H2블럭의 주택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상 청년계층 소득無/ 소득有 구별은 임대조건(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결정을 위한 것으로 신청자격과는 무관합니다

- **신청 시 '청년계층(청년,사회초년생) 소득無'로 신청하였으나, 자격검증및소명결과 소득이 인정될 경우, 청년계층(소득 有)의 임대조건을 적용함**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8.08~2005.08.07)**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179,557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출산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산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 · 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0인	120%	273,000,000원	37,080,000원
	2인	0인	110%	273,000,000원	37,080,000원
		1인	120%	300,000,000원	40,79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73,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0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20%	328,000,000원	44,500,000원
세대원(본인)	1인	0인	120%	273,000,000원	37,080,000원
	2인	0인	110%	273,000,000원	37,080,000원
		1인	120%	300,000,000원	40,79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73,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0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20%	328,000,000원	44,50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전 출생한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179,557원 이하
2인	-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무주택자**'란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 주택타입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경우
2순위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지역**인 경우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당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당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관악구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당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관악구에 3년 이상 거주	당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관악구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 터 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관악봉천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4000398**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3-3. 주거약자용 주택(17B, 19B)

■ 공급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대학생계층 혹은 청년계층의 입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가 이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3-1. 대학생 계층 **3-2. 청년 계층** **의 해당 내용을 따릅니다.**

"주거약자" 란?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공급대상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우선 공급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해당계층인 주거약자 포함)	**인터넷(PC·모바일) 2024.08.19.(월) 10:00 ~2024.08.21.(수) 17:00**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접수(주거약자에한함) 2024.08.20.(화) 10:00~17: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1층 고객상담실	**2024.08.28.(수) 17:00 이후**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2024.09.02.(월) ~ 2024.09.04.(수)**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서류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관악봉천행복주택 담당자앞 **※ '24.09.04.(수) 소인분까지 유효**	**2024.12.05.(목) 17:00 이후** (장소)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	**-전자계약 2024.12.18.(수) 10:00 ~ 2024.12.20.(금) 17:00** **-현장계약 2024.12.19.(목) 10:00 ~ 17:00 (주거약자에 한함)** ※현장계약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1층 고객상담실
일반 공급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필요서류를 서류제출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주거약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격 검증

- **관악봉천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신청자의 무주택 및 해당 세대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해당 세대원·대상자 등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대상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대상자가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대학생계층/청년계층 자산기준 적용대상자의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대학생계층/청년계층 자산기준 적용대상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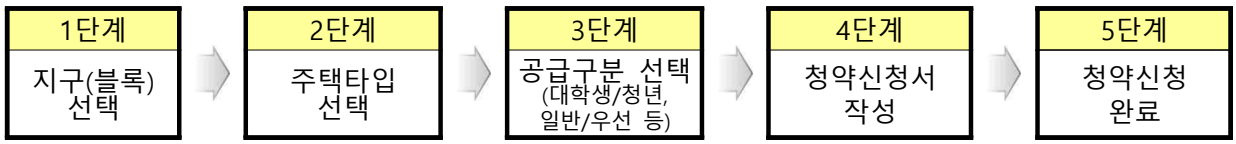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현장 신청자(주거약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4.08.19.(월) 10시부터 24.08.21.(수) 17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종료일은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4.08.19.(월) 10시부터 24.08.21.(수) 17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종료일은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 방법

○ 현장 신청은 주거약자 등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참조)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자에 따라 「5.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고,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신청장소	LH 서울지역본부 1층 고객상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논현동)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약도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4.08.28.(수)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청약』 클릭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청약』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의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24.09.04.(수)] 내 등기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 **현장청약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청약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8.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청약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청약자** : 청약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발급**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대학생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 **청년계층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초본 1통**	1통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년계층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지방고용노동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주거약자		· 대학생계층 혹은 청년계층인 주거약자로서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학생 혹은 청년계층의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하신 블록・공급대상・신청타입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추첨결과는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기간 : 24.12.18.(수) 10:00 ~ 24.12.20.(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table>
<tr><td rowspan="2">계약금 입금</td><td rowspan="2">우리공사 입금확인
(SMS 발송)</td><td>【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td><td>【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Google Play)</td></tr>
<tr><td colspan="2">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공동전자문서센터)</td></tr>
</table>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기간 : 24.12.19.(목) 10:00 ~ 17:00]**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1층 고객상담실
- 주거약자, 미성년자 등 현장 계약을 하시고자 하는 **당첨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사본	• (인감증명방식) 위임장(공사양식, 계약자(당첨자) 인감도장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 (자필서명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 날인),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유의사항**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 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⑫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td><td>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td>대학생계층</td><td>6년</td></tr>
<tr><td>청년계층</td><td>6년</td></tr>
</table>
* 대학생계층 혹은 청년계층인 주거약자는 대학생계층 혹은 청년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에 따릅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td></tr>
<tr><td>갱신계약 등</td><td>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단,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td></tr>
</table>

<table>
<tr><td></td><td>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
<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
<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
</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r><td>중복입주에 관한 사항</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대학생/청년계층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는 법령 상 중복입주로 보지 않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9항 참조)

</td></tr>
<tr><td>신청 서류</td><td>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td><td>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td></tr>
</table>

지구 및 단지특성	■ **지구여건** ・관악봉천 행복주택 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 주변에 동 주민센터, 관악구민 운동장, 관악구민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이 입지하고, 기존시가지와 연접하여 시장, 은행 등의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사업지구 인근 버스정류장, 낙성대역(1km), 사당역(1.4km)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당IC (1.4km)를 통해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이용 가능 ・사업지구는 관악산 자락 경계부에 위치하여, 관악산 둘레길 초입이 인접하고 있음 ・사업지구 인근 인헌초등학교, 사당초등학교, 인헌중학교, 인헌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등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하고 있고, 북서측 1km내 서울대학교가 입지하고 있음 ■ **단지 외부여건** ・도심지에 위치하여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먼지 및 진동에 의한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H2블록 후면에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H2 및 H3 블록 인근에 소규모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공원 이용자 및 등산객에 의한 생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H1블록 및 H3블록 후면 세대는 발코니 외부에 절토법면이 근접 위치하여 일조량・일조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H1블록(남측)과 H3블록(서측) 후면 세대 중 일부 저층(1~2층)세대*는 안전을 위해 설치된 건축 옹벽이 발코니 외부 1m 가량 이격하여 설치되어 있어 경관조망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자 하는 고객은 반드시 상기 옹벽관련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후에는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 및 위약금 면제 등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옹벽간섭세대】[H1블록] (101동) 111호~120호 (102동) 105호~110호 (103동) 105호~108호** **[H3블록] (301동) 109호~113호** ・H1블록 전면 남측방향 도로는 관악산에 접한 막다른 길이므로 차량 통행 및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H1블록 101동 근린생활시설(B1F), 경비실(1F), 공용주방세탁실(1,3F) 102동 기계/전기발전기실(B1F), 주민카페(B1F), 공동주방세탁실(1,3F) 103동 관리사무소(B1F), 숙직실(B1F), 방재실(B1F), MDF(B1F), 공동주방세탁실(1,3F) 101동과 102동 사이 주민운동시설(야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H2블록 201동 기계/전기발전기실(B1F), 경비실(1F), 방재실(1F), MDF(1F), 공동주방세탁실(2,4F)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H3블록 301동 기계/전기발전기실(B1F), 경비실(B1F), 방재실(B1F), MDF(B1F), 근린생활시설(B1F) 공동주방세탁실(1,3F) 설치될 예정입니다. ・H1블록과 H3블록에는 근린생활시설(상가) 또는 주민공동시설(주민카페,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될 예정(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위치는 팸플릿의 단지배치도 참조)이며, 해당 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의 특성상(진입도로 협소 등) 입주 시 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이삿짐 운반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건물 옥상에 설치되며, 태양광 설치위치 및 수량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기는 주택 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 H1블록 경비실 에어컨 실외기는 경비실 옥상, H3블록 경비실 에어컨 실외기는 해당 블록 상가 옥상에 설치

	• H1블록과 H2 블록의 경계 주변 다수의 한전 가공전주 및 가공통신선로가 설치(이설 및 철거 없이 존치예정)되어 있으므로 세대미관, 조망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후에는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 및 위약금 면제 등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관련 시설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및 시설물 등 조경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전조등 및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동과 인접하여 설치된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대) 주변으로 악취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내에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엘리베이터 홀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층의 복도는 공용부위이므로 입주자가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일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은 각 동 로비층 (B1/1층) 코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펌프실), 지하저수조 및 아파트 PIT내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중에 설치된 정화조의 환기를 위한 급기구가 101동, 201동, 301동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인근 세대의 경우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공동수신설비 수신안테나(행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는 아파트 103동,201동,301동 옥탑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발전기실 인접세대는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이 있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칸막이벽(비상탈출 가능)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 3~4F에는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타입에는 주방 조리대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옥탑층에 피뢰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103동,201동,301동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본 행복주택은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 인증 건물입니다. • 옥외 및 옥내(동출입구 및 출입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CCTV설비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소방시설(화재감지기, 주방자동식 소화기, 비상방송스피커 등)은 임의 변경, 탈착, 파손, 가구 등 물건적치로 인한 소방시설 작동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계층 입주세대는 원칙적으로 단지 내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 • 지상주차로 H1블록 2대(상가전용), H2블록 14대(청년주택용), H3블록 2대(상가전용)이 계획되어 있는 바, 단지 내 주차수요에 따라 주차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는 거실과 침실, 주방 등 천장에, 전열교환기는 발코니에 각각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실내환기용 급·배기 디퓨져 위치는 실내마감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욕실배기) 및 동력 흡출기(주방배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세대 내 문틀, 문짝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류(신발장, 냉장고장, 주방가구 등 포함)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하며, 직접 앵커못(볼트)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직접 콘크리트 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각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통합 관리반 커버는 노출형으로 현관에 설치예정이며 사이즈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욕실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되어 소음(벽체 울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타일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코니 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 발코니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비상탈출구(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입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수입상관이 실외기실 내부 및 세대경량칸막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및 온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발코니에 세탁기수전은 물뿌리기용 수전 겸용(냉수2구, 온수1구)으로 설치됩니다. ・발코니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벽체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탁실 출입을 위하여 출입문을 탈착해야할 수 있습니다. ・세대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는 화재 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세대경계부에 설치되어 있으니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A형, 17B형, 19A형, 19B형 타입은 주방이 있는 세대(개별취사형 세대)로서 렌지후드 및 빌트인 가스쿡탑 2구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타입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싱크대 하부는 급수·급탕분배기와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스배관의 플러그 마감 이후 연소기까지의 호스배관은 입주자 설치분입니다. ・17C형 타입은 주방이 없는 세대(공동취사형 세대)로서 렌지후드 및 빌트인 가스쿡탑 2구형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방이 있는 세대의 주방배기는 공용배기 루프팬(각 세대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에서 옥탑층의 공용배기 루프팬을 이용하여 배기)방식이 적용되어 레인지후드에는 팬이 설치되지 않고 댐퍼만 설치되며, 최상층 세대(주방유무 불문)의 경우 소음/진동/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 내 소형 냉장고 및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에어컨,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 규격의 차이로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팸플릿 확인 및 계약 이후 계약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시 실측이 필요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사항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본 주택은 인허가청 등의 요청 시 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주택 규모 미만으로서, 일반 공동주택 등에 비하여 관리비(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2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는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등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팸플릿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 의견, 관련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바, 신청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세대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팜플렛 상의 마감재는 실제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창호류, 주방가구, 신발장,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렛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절대 불가합니다. ・입주자는 주택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 당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퇴거 시 후속 입주자를 위하여 주택(부속물 포함)을 필히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는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참고)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입주예정자 카페, 동호회 등)를 구성하여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입주개시일 이전에 계약자(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통한 세대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
창호(직접면)	-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층간바닥)	-	홈네트워크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H1,2,3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우종합건설(주) 현도종합건설(주)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대평엔지니어링(주) (주)바탕건축사사무소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중 해당 편의시설 제공대상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기본 안전·편의시설이 기설치되어 있으며, 아래 항목은 제공대상자의 신청 시 추가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주거약자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주거약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주거약자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최초 모집)

주거약자용 주택이 아닌 주택(17B, 19B외 주택)의 최초 입주자가 장애인으로서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고, 동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방향 조정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종전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및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이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편의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접수처 약도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논현동)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07.

LH 서울지역본부